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6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0.

발의자 : 윤준병 · 임광현 · 주철현

송옥주 · 이원택 · 조계원

박민규 · 정동영 · 허영

신영대 · 김태선 · 문대림

황명선 · 김윤덕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, 임업후계자가 직업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, 20톤 미만의 소형어선, 농어업인의 용자 담보물,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, 해당 규정들은 농어촌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,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

면사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개간농지에 대해,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8조제1항).
- 나. 「농어촌정비법」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해,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8조제2항).
- 다.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면제 또는 취득세의 50%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8조제3항).
- 라.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,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그리고 어업권·양식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9조).
- 마. 농어업인에게 용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10조).
- 바.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,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

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13조제2항).

사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,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).

아.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167조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5년”을 각각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167조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